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산 업 입 지 및 개 발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41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산업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시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양식시설 포함
(안 제1조의2제4호)

최근 첨단 기술을 적용한 양식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현행 농·어업 등 1차 산업 시설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없어 이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 인증 등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9조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규정함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특례 규정(안 제9조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 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라. 사업시행 비용의 보조 근거 명확화(안 제26조제6호)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의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분양가 인하 근거 마련(안 제40조 제4항제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토지 등의 공급방법 규정(안 제42조의3제3항제1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가. 연구개발시설, 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
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대용량의 기반시설(용수, 전기 등)이 필요할 것
다. 해당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어종을 양식할 것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녹색건축의 인증 등 대상) 법 제7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특례) 법 제7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중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들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 진단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제2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해 이 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제40조에서 규정하는 분양가격에 따른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에서 제시하는 설비규모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나. 공장 등 건축물 및 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42조의3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에서 제시하는 설비규모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자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나. 공장 등 건축물 및 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가. 연구개발시설, 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
	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대용량의 기반시설(용수, 전기 등)이 필요할 것
	다. 해당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어종을 양식할 것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u><신 설></u>	제9조의2(녹색건축의 인증 등 대

<신 설>

상) 법 제7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특례) 법 제7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중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 진단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 개발사업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9. 「<u>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u>」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사업 10. 「<u>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u>」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제26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u>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u> 7. · 8. (생략)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해 이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제40조에서 규정하는 분양가격에 따른다)</u> 7.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
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에서
제시하는 설비규모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
하기 위한 경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
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나. 공장 등 건축물 및 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④ ~ ⑦ (생략)	<u>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u> <u>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에서</u> <u>제시하는 설비규모 등 구체적</u> <u>조건을 충족하는 자</u> <u>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u> <u>법」 제16조제7항에 따른</u> <u>녹색건축의 인증이나 같은</u> <u>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u> <u>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u> <u>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u> <u>인증을 받으려는 자</u> <u>나. 공장 등 건축물 및 부지에</u>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u> <u>개발·이용·보급 촉진</u> <u>법」 제2조제3호에 따른</u> <u>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u> <u>치하려는 자</u> <u>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스</u> <u>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u> <u>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u> ④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63